

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2003~3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	2003. 2.
제출자	거창군수

■ 제정이유

- 『민선 3기』 “행복이 샘솟는 생활복지”를 실현하고
- 군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.

■ 주요골자

- 교육원은 거창군관내에 설치 하도록 함. (안 제3조)
- 교육원은 평생교육과 관련한 계획 수립, 전문강좌 및 특별 강좌의 개설등을 주요업무로 함. (안 제4조)
- 교육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, 위탁운영 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임면 하도록 함. (안 제5조)
-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, 교육과정 편성, 예산 및 결산등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10인이내의 운영 위원회를 둬. (안 제7조)
-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. (안 제7조제2항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)

■ 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5조
- 민선 3기 군수 공약사업

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군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화·세계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“평생교육”이라 함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위치) 교육원은 거창군 관내에 둔다.

제4조(교육원의 업무)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육계획의 수립, 시행 및 홍보
2.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의 개설·운영
3. 기타 평생교육의 개선·발전에 관한 사항

제5조(교육원장)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명예직으로 하고 단, 위탁운영 할 시에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임면한다.

제6조(위탁운영 및 경비지원)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,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은 군수가 필요로 하는 강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군의회 의원
 - 2. 학계, 법조계, 사회단체, 체육관련단체, 사설교육단체, 주민등 각계 각종의 인사중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
 - 3. 평생교육관련 공무원(군청 및 교육청 과장급이상)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- 1. 교육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- 3. 예산 및 결산
- 4. 교육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
- 5. 기타 교육원의 운영상 원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

제9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의를 개최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2.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때
 - 3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의견청취 등)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

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거창군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